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나286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나2863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가단13881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집현전

담당변호사 김명진

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성환, 김진희, 구자혜

변론종결 2021. 5. 14.

판결선고 2021. 7. 2.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가단13881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1.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7.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22. 접수 제1098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1.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273,437,49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273,437,4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이지현, 판사 이일영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광진구 J

[도로명주소] 서울 광진구 K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 및 그린생활시설

1층 ~ 4층 107.88㎡

지층 116.01㎡

옥탑1층 11.61㎡(연면적제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 광진구 J 대 202.3㎡

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지층 L호 철근콘크리트구조 39.88㎡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02.3분의 9.14

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M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7.81㎡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02.3분의 30

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H호 철근콘크리트구조 38.46㎡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02.3분의 19.72

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N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7.81㎡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02.3분의 30

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I호 철근콘크리트구조 38.46㎡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02.3분의 19.72

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O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7.81㎡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02.3분의 30

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P호 철근콘크리트구조 38.46㎡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02.3분의 19.72

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Q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3.77㎡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02.3분의 30

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R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2.36㎡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02.3분의 14 끝.

